

예산총칙

2024년도 간주예산 4 차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9,794,727	20,993,842
일반회계		688,863,558	20,665,907
특별회계		10,931,169	327,935
	기타특별회계	10,931,169	327,9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5,100	1,353
	주차장 특별회계	9,913,613	297,40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8,026	18,841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223,642	6,70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8,797	2,064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1,991	1,56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396,920천원(일반 6,231,000천원, 재해·재난목적 10,165,92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